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5437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 신매체이용음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5437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임두환(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내 것 어떻게 되었나 봐 달라', '나랑 5분만 나가서하자, 하기 싫으면 입으로 해 달라, 나 너무 하고 싶다, 좀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손을 다친 다른 손님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 편의점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6. 9. 2. 22:18경부터 같은 날 22:2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F'에 접속한 후,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저 님이랑 그거하고 싶어요, 혹시 그거 해봤어요???, 저 넣고 싶어요, 섹스해 봤어요, 성관계 해 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행) > 기본영역(6월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양상윤